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기찬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발 의 자 : 최기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정환, 이광성, 장상기,
문장길, 김경영, 오현정,
정진술, 이동현, 송정빈,
강대호, 김화숙, 박기재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는 2010년 12월 자살 예방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를 제정하였음. 2016년 한 해 서울시 자살인구는 2,261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살시도자가 자살에 임박할 때 보내는 경고신호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.

○ 현행 조례는 자살고위험군의 적극적 조력 요청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 의미의 자살 예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자살예방효과가 미흡한 실정임.

○ 이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민이 제3자의 자살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, 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시민이 자살예방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추가함(안 제3조)

나. 시장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할 책무를 부과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민은 자살위험자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, 이에 대처하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, 대처하기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민은 자살위험자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, 이에 대처하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 다.</u></p>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자살징 후를 조기에 발견하고, 대처하 기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방 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